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7
----------	-----

발의연월일 : 2024. 1. 16.

발의자 : 김영실, 이상기, 박윤옥,
이경숙, 김동훈, 원주영,
김지훈(국), 조성대, 박경원,
손정자, 이수련, 한송연,
전혜연, 한근수

1. 제안 이유

남양주 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 (안 제1조~제3조)
- 나.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5조)
- 다. 심폐소생술 교육, 상설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
- 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지원과 홍보,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 함(안 제8조~제10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라.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을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대상 교육 방안
3.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상설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에 대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시민 등의 교육)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상설교육장의 운영) 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등)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 첨부 사유

○ 2024년도 사업운영 예산액(상설교육장 운영 제외) : 38,200천원

- (교육비) 350천원 × 80회 : 28,000천원

- (소모품비) : 400천원

- (사무관리비) : 9,800천원

○ 상설교육장 운영 시 예상액 : 45,948천원

- (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채용 : 30,648천원

- (장비) 교육용 마네킹,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 5,100천원

- (소모품비) : 400천원

- (사무관리비) : 9,800천원

※ 인력 채용 예산 및 교육장 접근성 문제 등 향후 여건이 조성될 때 상설교육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기관·단체 지원 : 지원 대상·규모·내용 등 구체적 산출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 추계 불가

4. 작성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

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 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홍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홍보의 대상·내용·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육·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